

특별공급 청약안내

특별공급 청약 Check Point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2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

- 본 아파트 공급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이나, 경쟁발생 시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됩니다.

3

재당첨 제한 무

-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사람도 한차례에 한정하여 신청가능
-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 :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신청 가능

구분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청약 자격	주택소유	무주택세대 구성원(청약자 및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요건)				
	기본자격	해당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	혼인기간 7년 이내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 및 입양 포함)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세대원포함) ※ 혼인 전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이력 배제	만 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만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청약가능면적		전용 85㎡ 이하	전용 85㎡ 이하	면적 제한 없음	전용 85㎡ 이하	면적 제한 없음
선정방법		관련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름	소득▷순위▷거주지역 ▷미성년 자녀수 ▷추첨	거주지역▷배점기준표 ▷미성년 자녀수 ▷청약신청자 연령▷추첨	소득 ▷거주지역 ▷추첨	거주지역▷가점산정 ▷청약통장가입기간 ▷추첨
청약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요건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기관추천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청약통장 필요없음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한국부동산원 청약자격 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세대구성원 등록 시 세대원의 제한사항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의 동의 필요)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Click



특별공급 제한, 가점제 당첨자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확인

※ 주택소유 확인 일반공급 가점제·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청약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Click



건축물대장정보·분양권 거래내역·재산세정보 확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 배우자와 통장기간을 합산해 청약하신다면, 배우자 ‘순위확인서’로 가입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청약자격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Click



청약통장 가입일·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확인

청약신청 및 청약자격확인인 청약Home(www.applyhome.co.kr) 접속 및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공동인증서 등)이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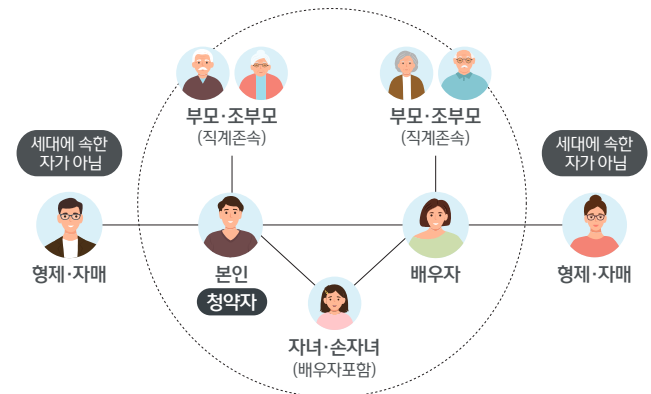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등이 무주택 ※ 배우자의 직계비속(전혼자녀)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기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원’에서 세대원의 범위 확대로 ‘동거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꼭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청약 시 세대원 판단 기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청약 Check Point

- 해당 기관으로 신청 필수**
 - 장애인(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인터넷 청약 신청 필수**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 청약Home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청약 자격조건

구분	내용
신청 자격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추천 기관

구분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청약통장 필요 없음
	경기도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남부보훈청 복지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남부보훈청 복지과	
중소기업 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복지사업운영과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복지사업운영과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

청약 Check Point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자 * '24.03.25.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성년 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
- 경쟁 시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
• 경쟁 발생 시 당점자는 별도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청약 자격요건

구분	내용
신청 자격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및 입양을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24.03.25. 시행) (1)임신 : 임신진단서제출 (2)입양 : 입주시까지 입양 유지 (3)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 부양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당첨자 선정방법	(1)지역 → (2)배점 → (3)미성년 자녀수 → (4)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5)추첨 (1)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 (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 (경기도, 인천광역시)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2024.03.25.)]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서울특별시 거주자 50% 우선공급에서 낙점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3명~5명 이상(기준) → 2명~4명('24.03.25. 시행)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필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

청약 Check Point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배우자 포함)인 자
- 신청유형 확인 필수!**
①신생아 우선공급(25%) ②신생아 일반공급(10%) ③우선공급(25%) ④일반공급(10%) ⑤추첨공급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세대당 소득이 각 공급대상별 소득요건 이내이어야 합니다.(※ 추첨공급 제외)
· '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
-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청약 자격요건

구분	내용
신청 자격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분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 소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순위 없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가능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당첨자 선정방법	· (1)소득구분 → (2)순위 → (3)지역 → (4)미성년 자녀수 → (5)추첨 · (1)소득구분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00%(맞벌이 120%)이하인 경우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40%(맞벌이 160%)이하인 경우 3단계 우선공급 25%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00%(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 4단계 일반공급 10%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40%(맞벌이 160%) 이하인 경우 5단계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40%(맞벌이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2)순위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중이거나 입양을 포함)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3)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대표전와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펼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

청약 Check Point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 무주택세대주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 '가점제'에 따라 선정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 '가점제'(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의거한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 선정
-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및 무주택 세대주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직계존속의 무주택 조건 충족

청약 자격요건

구분	내용
신청 자격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 ※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세대구성원은 청약불가)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충족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1)지역 → (2)가점 → (3)청약통장 가입기간 → (4)추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가 기타지역(경기도·인천광역시) 거주자보다 우선 - 경쟁이 있는 경우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 - 동일점수로 경쟁 발생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순 ※ 가점계산 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합산 불가(일반공급 가점제만 가능)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1)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9년 미만	40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35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5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15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10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40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4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40	
(2)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 서류 ①만 18세 이상~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산정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1)+(2)+(3)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내

청약 Check Point

1	현재 및 과거 모두 주택 소유 •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처분한 주택은 제외
2	신청유형 확인 필수! ①신생아 우선공급(15%) ②신생아 일반공급(5%) ③우선공급(35%) ④일반공급(15%) ⑤추첨공급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세대당 소득이 각 공급대상별 소득요건 이내이어야 합니다.(※ 추첨공급 제외) • '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
3	소득세 납부조건 충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한 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4	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청약 자격요건

구분	내용
신청 자격	• 혼인(재혼 포함)증이거나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가 있는 자 또는 1인가구 * (1인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예외)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당첨자 선정방법	• (1)소득구분 → (2)지역 → (3)추첨 • (1)소득구분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 공고일 현재 2세미만(2세가 된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인 경우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공고일 현재 2세미만(2세가 된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월평균소득이 130%초과 160% 이하인 경우 3단계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인 경우 4단계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130% 초과 160% 이하인 경우 5단계 추첨공급 : 혼인중이거나 미혼인자녀가 있는분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가구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2)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증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본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청약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